

아동학대의 눈으로 본 체벌과 학생인권 토론회 (속기)

>> 17:06 시작

고유경(사회): 9.30.(29.)자로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었다. 체벌이 학대라는 문제의식으로 이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를 소개한다. 학대와 체벌사이, 개념과 사례를 얘기해주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씨, 아동학대 관련 법과 학교 체벌 등 관련 법률의 의미와 해석 가능성을 검토해주실 민변 교육위 김병희 변호사, 그리고 토론자로 아수나로의 준영씨, 인권배움터 봄 초당초 이기규 선생님, 세이브 더 칠드런 국내옹호팀장 김은정팀장님, 구로 파랑새 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송태숙 선생님. 발제는 20분, 토론 10분씩 진행된다.

>> 17:08 공현 발제

공현: 사실 학대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일단 체벌이라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학대의 개념에 들어가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발제를 해보려고 한다.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 앓았다 일어났다 800회 근육 파열 사건이 크게 일어났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200번 넘게 한 적이 있었다. 알이 배겨서 계단도 못 오를 정도였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200번은 문제가 아니고 800번이어야만 학대인지에 대한 큰 문제제기가 필요할 것 같다. 1대는 쾨찮고, 50대 100대면 문제가 되고. 앓았다 일어났다 몇 회부터 폭력이 되고 문제가 되는가가 애매모호하다. 체벌과 학대가 다르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런 의문이 생긴다. 명확한 지시를 해줘야 하는 정부나 법원에서 태도가 모호하다. 판례들을 봐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가로 불법행위냐 정당행위냐로 나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최근 아동학대특례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 관련자들이 보여준 태도는 가정에서 훈육목적의 체벌까지는 학대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체벌이라는 것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많이 정의가 되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욕적이거나 비인간적 대우까지 체벌로 포함을 시킨다. 그에 비해 학대는 좀 더 모호한 면이 있다. 사전에는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법적으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해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대가 더 폭넓게 정의가 되고 있다. 정부 입장은 학대는 안되지만 체벌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면 될 듯하다. 교육부에서 소위 간접체벌은 허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찰도 모든 체벌이 학대로 보기 힘들어서 정도와 지속성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모든 체벌이 학대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와 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체벌이 학대라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디 부터가 학대냐고 했을 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제 생각에는 주된 기준은 행위가 어떤 것이었냐 보다 가해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냐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다.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 것은 교육적 체벌이고 악의적인 것은 학대로 보는 것 같다. 하지만 가해자의 의도가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형량을 정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학대에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행위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여러 논문들을 봤는데 체벌경험이 아이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다. 연구들도 체벌을 모두 학대에 포함시킨 것과 구별시킨 것이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더 높은 공격성을 갖는다는 논문이 많이 있었다. 자기통제력을 낮춘다는 연구가 많이 있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배적인 연구결과이다. 반면 체벌경험 관련해서는 학교체벌에 초점을 맞춘 것이 많이 있는데 자아정체성을 낮춘거나 공격성이나 그런 것을 높이고, 문제아를 인식하는 정도로 키운다는 연구들이 제시가 된다.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다만 정도의 차이, 수치의 차이가 나타날 뿐. 체벌이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 면에서 구별하기 힘들다. 체벌에 우호적인 사회일수록 아동학대 증가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체벌과 학대를 구별하려고 하더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체벌은 학대의 한 유형, 약한 수준의 학대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체벌의 형태가 구타이든, 가혹행위, 소위 말하는 기합이든. 그것이 청소년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면 신체에 가하는 폭력이 당연히 학대의 일종에 포함될 수 없을 것 같다.

법적인 부분은 김병희 변호사가 이야기할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접근해도 체벌이 허용될 수는 없다. 특례법에 보면 아동학대 중에서 형법상 폭행, 상해, 학대, 유기, 감금, 모욕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아동학대범죄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폭행이 모든 형태가 포함된다. 따라서 당연히 아동학대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 군형법 가혹행위 금지등을 봤을 때 얼차려 등도 아동학대 범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을 보더라도 그렇다. 유엔의 고문 등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통상적으로 고문 등에 대해서 금지할 때 적용되는 CCPR규정에 대해 교육적 수단으로서의 체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밝혔다. 비인간적 대우를 어느 곳에서든 폭력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계속해서 권고를 했다. 체벌이 없어도 교육이 망친다는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대는 나쁜 것이고 체벌은 좋은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모순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나 사람들의 반응이 혼란스럽다. 그런 혼란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하는 것에 망설임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이 신고했을 때 특별히 큰 피해, 상해를 입증할 수가 없다면 주변으로부터 쉽게 어떻게 부모를 신고하느냐, 스승을 신고하느냐, 라는 손가락질이나 압박을 받게 되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면 부모를 신고한 기사 댓글에 저런 애들한테 매가 약이다.. 그런 의견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신고의무자들 역시 학생이 학교에 멍이 들어서 와서 왜그러냐 해서 때렸다고 했는데 괜히 했다가 가정파괴범 소리나 듣는 것 아니냐의 주저함이 생겨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교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신고에 대한 부담도 체벌에 관대한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훈육목적의 체벌에 둔감하고, 국가나 제3자 개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동학대를 유지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체벌이면 학교체벌, 학대는 가정학대가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학교나 학원 체벌에 적용된 예가 있다. 식칼로 체벌을 했다는 최근의 사례이다. 경찰에 고발이 되었는데 이 사건 역시 아동학대혐의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이슈가 된 사건들. 심하다고 된 사건들에 주로 적용이 되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가 적은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 같다. 특히 미취학 아동에 적용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런 사례가 별로 없고 단지 폭행으로 처벌이 되는 것 같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고3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적용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관념에 좌우되는 것 같다. 현재 이렇게 적용 자체가 사회통념에 좌우되

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고.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할 것 같다. 단지 개인, 경찰 의지에 맡겨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인권침해 문제가 그렇겠지만 아동학대도 예방이 중요한데,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임시보호조치, 재발방지 치료, 예방, 교육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체벌을 아동학대로 포함하자고 했을 때, 손바닥 한 대만 때려도 감옥을 가나라고 하면 기분같아서 경찰서 가야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처벌을 어떻게 하나의 문제보다 아동학대가 될 수 있고,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좋아리 맞으면서 컷는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체벌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사실 아동학대 여부를 논할 때 사회통념이 근거가 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경험한 청소년의 입장에서 먼저 고려해야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합의라는 것은 어른들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 결국 가해자 중심적일 수밖에 없음.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 발달을 보다 폭넓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단지 눈에 띄는 상해가 아니라 폭력에 우호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을 깃뺏히는 경험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발달이다. 이러한 해석에서 아동학대개념을 넓혀서 봐야 한다. 현재까지도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공간은 학교. 체벌하는 교사가 단 한명만 있어도 경험하는 학생은 수백명이다. 학교에서 체벌문제까지도 아동학대 적용하는 것이 체벌을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점 중 하나는 체벌만 아니라 학생인권침해 문제 중 많은 것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돌림 중용으로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감금하거나 모욕적인 처우를 할 때 아동학대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를 학교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재같이 모호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유경: 정상적인 발달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가장 높은 단계를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인상 깊게 들었다.

>> 17:30 김병희 발제

김병희: 앞서 학교체벌과 학대에 대해서 학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몹시 괴롭히거나 학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 애매모호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모든 범죄 예컨대 사기죄 등도 모호한 개념이다. 여러 사례가 쌓여서 가이드라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먼저 형법상 개념을 본다. (조문 자료집참조) 판례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의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다. 체계상 유기와 학대가 같은 장에 편재되어 있다.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판단을 한 듯하다. 그래서 특별법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별법 개념을 본다. (조문 자료집 참조) 특별법은 유기에 준할 정도가 아닌 방임하는 정도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폭력은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된다. 특별법 목적을 보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한바. 3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2 긴급한 조치, 3 보호가 세 번째 인 듯하다. 그래서 이 법을 보면 이 세 가지에 치우쳐서 법이 구성되어 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특별법이 학대의 범위를 넓히고, 연령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학교체벌에 적용하면 이전에는 폭행이나 상해, 모욕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었다. 학대는 유기에 준할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대구지방법원 판례다. 귀걸이 달라고 하니 책상에 들이 받고.. 전치 2주 상해죄로 의율한 판례다. 두 번째는 인천지방법원 판례다.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했다. 초등학교 2학년 나무막대기 수습회 2-3주간 때린 사안이었다. 누가 봐도 상해라고 인정될 사안이다.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 행사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교사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너무 많이 때려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대가 인정된 예도 있다. 아동복지법으로 의율된 판례다.

특례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첫 번째 판례는 수 십대 명이 들에 때린 행위에 대해 학대 인정한 판례다. 어린이집 갖돌을 지난 피해자가 밥을 삼키지 않자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때린 사례다.

아동학대특례법 적용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학생이 18세 미만이다. 교사도 문언 해석상으로 당연히 적용가능하다고 보인다. 판례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판례인데, 밑에 줄친 부분을 보면 사회통념상 용인될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때에만 정당행위로 본다.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학교장 위임을 받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사용해서 아니된다라고 개정이 되었다. 전 판례이므로 이제는 적용되기 힘든 판례이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초중등교육법보시면 학생의 징계가 있고, 시행령엔 학생의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어느 곳에도 체벌에 관한 내용은 없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기시면 10페이지에 고등학교 학칙 규정을 받았는데 제 친구인데 밝히지 말아달라고 해서 모 고등학교라고 썼다. 첫 번째로 학교내의 봉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사회봉사, 세 번째가 특별교육이수, 네 번가 퇴학처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친구 말에 의해서도 아직 체벌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적용되는 점에 대해 문헌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적용된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신고의무에 대해 오른쪽 박스를 보면 너무 많아서 적용되는 부분만 넣었다. 간단하게 누군가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면 신고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편할 것. 따져볼 필요 없이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 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점은 지금까지 발제하는 순간까지 필요한 것은 개념과 인식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아동이라고 했을 때 학생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집에서 키우는, 어린이집 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석상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학교 체벌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것에 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만약 너무 적용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학교체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론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합의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많이 거부를 할 것이다. 학생들에 많이 치인다 이런 것으로. 이런 점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권은 본인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널리 퍼졌을 때 학교체벌에 대한 인식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인상적인 것은 법적용은 문제가 없으나, 사회적 인식이 문제이다라고 한 부분. 학교체벌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라는 말씀은 반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도 교사들이 거부감, 피해의식을 갖지 않을 것인가. 대립각이 세워지지 않을 것인가가 가장 걱정되었는데 그런 점을 짚어준 것 같다.

>> 17:47 준영 토론 시작

준영: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체벌에 대해 얘기를 해볼 때 먼저 체벌의 경험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 같다. 모두가 학교에서 웬만하게 체벌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에서 맞으면서 훈육받은 경험이 있을 것 같다. 저는 중학교 들어가서 많이 맞았는데 생각하기 싫은 기억이라. 페이스북 같은 데에 학교 같은 것 써 놓는데, 중학교는 안 쓴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성복구 --- 중학교. 불쾌해서 이 학교 나왔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미묘한 감정이 있다. 생각하기 싫은 기억이 많이 남아 있다. 체벌이 있었고 과생형 상품, 주변에 연대책임을 물어서 때린다거나. 간접체벌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체벌을 많이 받았다.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이 그런 것을 보니 우리 학공데 중학공데 생각이 많이 들었다. 체벌이 결국 학생을 훈육한다기 보다 옛날 독재정권같이 다른 의견도 못 내게 막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따진다기 보다 때려서 학생을 말 못하게 막는 것이 많지 않았나 생각 든다. 체벌받을 때 존엄이 깎그리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든다. 노예처럼 굴복되는 것. 무엇보다 그래서 체벌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것. 많이들 트라우마로 남았다. 안 좋게 호소하는 친구들도 봐왔다. 무엇보다 교육적 벌이라기보다 징벌에 가깝다. 교육적 벌은 반성한다는 차원. 그것보다 교사 개인의 응징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이 교사의 자의. 교사의 개인적인 판단. 너 좀 시끄럽네 체벌. 수업준비 안했네 체벌. 이벤트 식으로 이루어지는 체벌. 규제가 안되고 사회적으로 때린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체벌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체벌은 익숙해지기 때문에 더 무섭고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와서는 체벌이 없었다. 2년 동안 체벌이 없는 것을 경험했는데. 체벌을 다시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학생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잘 못된 것이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든다. 체벌은 익숙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문제라고 생각한다.. 폭력으로서 학생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공간에 있게 되면 논리를 대면하게 됨. 때려서 가르치면 된다. 라는. 익숙해지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벌이 교육적인 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난다.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별로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할 별로 바라보는 시선이 우세했는데 지금은 비등비등하지만. 여전히 그런 인식이 많다. 2010. 체벌금지 조치가 있었다. 체벌이 사라졌다. 제가 중학교 때 였는데.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부활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오장풍사건인 것 같다. 인터넷에서 파급이 커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방학쯤에 체벌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얼마 안가서 설설 다시 때리기 시작했다. 교육청의 조치를 체벌이 잘못 되었다 라는 조치로 생각했다기 보다, 막 때리니까 오장풍 같은 애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적당히 해라. 정도의 행정적인 조치로 생각한 것 같다. 인식적인 전환을 위한 교육, 활동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교사들도 그냥 사회적 파장이 큰 일이 생겼으니. 조치가 있는 뒤에 이 정도로 팬찮겠지 았았다 일어났다 시키거나. 너무 심하게 폭행만 안하면 되는구나. 하고 폭

행과 체벌이 구별이 되는 것이다. 체벌이 폭행이고 특례법 학대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학교 안의 체벌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아동학대법 제정된 것에 맞춰서 체벌을 학대로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체벌은 학대다를 공론화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에서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학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가 따로 연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생들에게 중요한 일인데 안내를 따로 받은 적이 없다. 특례법과 연결하는 인식이 부족하다. 운동 차원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체벌사례를 특례법과 관련지어 고소, 고발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회적 인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면 사회적인식 변화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벌이 근절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후의 과제를 생각하면, 다시 생각할 문제점을 생각해보면, 2010년 체벌금지를 얘기 하면, 았았다 일어났다고 시켰지만, 감지시키고, 때리는 것은 학생들 괴롭히는 방법이 있었다. 여기 썼듯이. 벌점제 칼같이 적용. 체벌은 폭력이라고 한다고? 별거 아닌 것에 도달했다고 교사지시 불이행으로 벌점부과하고. 학교 안에서 권력관계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체벌이 아니더라도 가혹행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실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민주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도 없고 교사 자의적으로 때리거나 벌점주거나. 이런 민주적인 분위기가 없어서 그런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래야 체벌이 없어지고 나서 발생할 권력관계에서 발생할 교사의 자의적인 가혹행위 등도 없어질 것이다. 그것 외에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체벌이 학대라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어 이야기를 마무리 하겠다.

고유경: 체벌이 없어진다해도 권력관계에서 야기되는 가혹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민주적인 토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인상깊게 들었다.

>> 18:00 이기규 토론

이기규: 토론자로 나오면서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체벌금지를 이야기 했는데 제가 여기서 반대 얘기도 해야 하는데 굳이 왜 저를 섭외했는지 생각했었다. 전교조 안에서도 체벌금지 선언하면 전교조를 탈퇴하겠다는 교사도 있었음 지금은 모르겠다. 지금도 고민되는 것은 사실이다. 저는 이 얘기가 굳이 논의할 건가 생각이 든다. 당연히 학대. 이게 어떤 논쟁거리인가 생각된다. 아동학대가 폭이 더 넓다. 체벌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퇴학권고, 그 외 체벌이 아닌 간접체벌이라는 말로 되는 여러 가지 말의 방식의 여러 가지 윗몸일으키기도 일종의 체벌이고 학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선생님들 중엔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교육적 가치를 가진 행동인가. 하면 별게 아니다. 지각했으면 지각 표시를 하면됨. 체벌하면 지각표시를 안하나? 그렇지는 않다. 교육벌이라는 의미도 교육이면 교육이지 왜 교육벌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벌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성인에 대한 벌을 때려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 군대가 있다. 군대와 학교처럼 수직적,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라면 감옥에서 조차 벌을 그런 식으로 주지 않는다. 통용되는 이유는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마치 체벌은 벌을 줘야 하는 거고, 학교는 벌을 받아야 하는 거고. 이런 인식들을 해 왔기 때문에, 폭력이고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교육적 행위인양 얘기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가정에서의 학대도 마찬가지이다. 아무 이유 없이 학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거짓말 했다, 얘기를 해줘도 되는데 굳이 때리는 것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결

국 폭력적인 성향과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행하는 통제방법이다. 때문에 가능한 것이 더 의미있는 행동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학생을 폭력하는 학생들 주장이나 교사의 주장과 비슷하다. 기어오르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나라는 이야기가 힘있는 학생들의 이야기와 뭐가 다른가. 똑같은 방식이다. 폭력이 당연하다는 인식. 어른들이 하는 폭력이니 이름만 바꾼 폭력인데도 정당화 되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가하는 학생들이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교사는 체벌이고 교육적인 벌이고 교육적인 선택이다. 사회적합의라는 말은 정말 싫어한다. 이게 합의될 문제인가. 이걸 힘 있는 사람이 당연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폭력하고 방임하는 것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너가 재수없고 싸가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거야.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준영씨가 교사 교육 받다가 물었는데 교사 교육 받는다. 과태료 내니까 신고 하라는 교육은 받는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하는 것 아동학대. 교사가 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 반애들에게 그랬다. 강제로 수학경시대회 본 애들에게 그랬다. 이것 때문에 욕을 먹거나 휴대폰을 뺏기면 얘기해라. 내가 신고의무자야 얘기했다. 교사들은 그렇게 두들겨 패고 퇴학시키는 경우가 많다. 끝까지 붙잡는 경우는 없음.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이야기 한다. 사법당국도 힘있는 사람이다. 힘있는 사람에겐 당연한 것. 경찰도 마찬가지.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최근 남편에게 폭력당해 신고한 사례 부인이 암매장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이게 심각하구나 하고 얘기하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이든 교사가든 부모님도 마찬가지. 부모님도 마찬가지. 이 구조를 전혀 깰려고 하지 않는다. 학대를 양산한 사회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경쟁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용인되는 사회. 맞벌이가 많다보니 아이들을 얹혀놓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이다. 무엇인가 애길 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교사의 역할을 좀 다르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가 아니라 학대가 일어났을 때 그냥 신고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학생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 교육제도의 문제다 하면 교육제도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지. 학생들 스스로가 인권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지원도 하고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한다. 교사 학생들이 바뀌어도 안 되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한다면 굳이 체벌이 필요한가. 간혹 가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심해져서 폭력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없이는 세상 패러다이스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만드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린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인권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교육을 제대로 받으려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학원에서는 어떻게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어떤지. 그것이 학대일 수도 있으니까 신고할 수도 있어야 해. 라는 걸 교육을 통해 받아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이 법이나 제도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놀라는 것이 아니라. 버릇없는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게 아닐까. 인권, 권리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하지 않을까. 어린이 청소년들의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고유경: 감사한다. 학생을 학대하는 주체, 신고해야 하는 주체로 되기보다는 학생 인권을 옹

호하는 주체가 되자,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다. 저희 토론회가 지향하는 바가 힘을 얻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 18:15 세이브 더 칠드런 김은정 토론

김은정: 먼저 이렇게 토론자리를 마련해준 주최측에 감사를 드린다. 저는 첫 번째 발제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문 작성해온 것 읽겠다. 학생과 체벌사이의 관계 이야기 하면서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 했다. 청소년이 존엄성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학대의 일종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사회에서 폭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공감한다. 매년 아동학대 현황을 발표하는데,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는 세배 이상 증가했다. 80% 가정, 76%는 친부모에 의해 30%는 매일 학대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2명에 달했다. 경찰에 포함되지 않은 수를 보면 22명을 넘을 것이다. 이정도 퍼센트 비율은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 집에서 나오는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가정이다. 이걸 신고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고 정말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다. 사실은 훨씬 많은 숫자가 학대로 사망했을 것이다. 2014년도 울주, 칠곡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목적에서 훈육목적의 체벌이었다고 이야기 한다.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한다고 생각한다. 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한다. 가정 내 체벌은 근절되어야 한다. 김병희 변호사가 특별법을 설명해주었는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특별법시행으로 달라진 것들은 가중처벌, 임시조치 가능 등의 내용이 있고, 학대예방업무 담당하는 관련자들이 늘어났다는 점이 있다. 아동학대 예방업무 관련자들이 학대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실상 나오는 판례들을 보면 답답하다. 최근 훈육차원으로 뺄 때린 것이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조사과정에서 보면 훈육차원에서 뺄 때린 적은 있지만 멧게 때린 적은 없다고 했다. 엄연한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훈육 목적으로 한 것은 약한 정도의 체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한 것이다. 이런 시각이 체벌과 학대는 다르다고 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체벌이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는 폭력적, 모욕적이라고 간주하지 않고 있다. 체벌금지가 어떻게 가능하냐 생각하면, 체벌금지를 법으로 했던 나라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스웨덴이 체벌금지를 법에 규정했고, 전세계 43개 국가에서 체벌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가정, 학교, 어린이집, 사법체계까지 모든 곳에서 어떤 종류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까지 체벌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나라들을 보면 체벌을 확실하게 금지하려면 체벌을 법에 명시해서 금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이때 체벌이 뭐냐 하면, 체벌을 광범위하게 규정할 것, 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도구를 이용한 체벌, 아이를 할퀴거나 꼬집는 것, 원치않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 무시하거나 ... 책 임전가, 겁주기 등 도 신체적으로 표시나지 않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1979년도에 스웨덴에서 법제화했다고 했는데, 이후에 체벌 인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제적으로 체벌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30년이 지나고 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용한 것은 체벌했느냐 안했느냐 부분인데 1960년에 일상적에서 70년대 50퍼센트로 줄어들었고, 2011년에는 3%정도만 체벌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벌금지가 법으로 적용된다는 주장에서 드는 자료이기는 하다. 그런데 체벌금지를 법으로 금지해놓고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스웨덴은 부모 및 보호자법

규정의 위당을 가지고 다양한 홍보를 펼쳤다. 심지어 우유상자에 광고 문구까지 넣었다. 전 국민에 홍보하였다. 체벌하면 안되는 상황임을 알리고 부모와 자녀가 토론하도록 하고 학교에도 알리는 활동을 했었다는 것이다. 준영님께서 학교 안에서 안내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졌으면 이 부분이 홍보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개인과 집단 수준에서 책임감이 높아졌고, 체벌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줄어들었다. 상식적으로 체벌하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작년에 체벌금지 3일 동안 부산에서 부스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스웨덴에서 왔던 사람이 체벌이 금지된 사회에서 자랐는데 스웨덴에서 체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어떻게 가능한지를 물었는데 아이들이 맞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더디되는 것은 맞지만 진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도 노인 등과 같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입법을 먼저 달성을 했다. 입법절차는 대중을 따르기보다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부모를 범법자로 기소한다기보다 교육, 법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작을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사회적 저항을 줄이면서 할 수 있을지 과제이다. 결국 타 국가의 좋은 사례들을 보고서 첫 발을 뗀 것이다.

사회자: 체벌을 명시해야 한다는 말이 중요하게 다가온다.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안다 그 운동이 어찌면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문제의식도 심어준 것 같다.

16; 25 성태숙 토론

저는 안 와도 될 뻔했다. 쓰고 나서 보니까 다 하신 이야기들을 다 하셨다. 지금 체벌과 아동학대 이야기 하는데,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왜 때리고 왜 맞냐. 싸우고 지지고 묶는데 그걸 말리는 게 진짜 일이다. 왜 때릴까? 그렇게 생겨먹었나? 아니면 보고 배웠나? 원래 고유하게 폭력성이 지나쳤나, 라고 이야기가 된다면, 색출을 해서, 찾아내서 치료하던가 교정하던가 이런 걸로 얘기가 풀어지는 거고 그렇게 된면 뇌에 무슨 이상이 있나? 하면서 죽 이렇게 엄청나게. 그렇지 않고 어디서 보고 배운 게 틀림없다. 인간의 행위라는 게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틀림없으므로. 그런 게 아니겠나 하면 아동학대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이를 놓고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 집에서 보고 배운 게 틀림없는데,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상담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야겠네. 라고 얘기되는데. 그 교사가 그 부모가, 아이가 좀 모자라, 됴됨이가 부족해, 라고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근데 자꾸만 문제 있는 사람들을 집어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칠곡 사건 같은 거 보면 막 사람들 별떼같이 일어난다. 그거 봐라 그 사람 계모였더라... 국회, 경찰은 뭐했냐. 교사들은 뭐했냐.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질타를 받고. 그러면서 국회가 나오고 나서, 법을 만든다. 우리나라처럼 남의 것 빨리 빨리 잘 받아들이고 하는 나라가 방안이 없어서 이게 안 되겠다. 아동학대특례법도 만들어져 쑥. 방안이 없진 않을텐데 도대체 이게 뭐가 어찌되었나를 살펴보자면. 폭력이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힘의 사용이라는 게 사실 중립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먹고 사려고 코끼리 사냥해서 먹고 그런 건 학대가 아니냐? 폭력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안의 폭력성이라는 게 있고, 힘의 사용이라는 게 늘 있는데, 사회는 늘 관리해왔다.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해왔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관리가 안 되었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 됨. 이기규 쌤은 사회가 미쳐돌아간다, 하는데... 체벌 말 되나요? 하지만 요 바깥에 나가면 그 사람들은 때릴 수도 있고. 자기 부모들은 일용직 슈퍼아줌마로 캐셔로 나가면, 점장이나 팀장한테 두들겨맞기도 하고 욕도 먹는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들어와서 나는 애를 때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겠는가.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내가 애 한 대 쳤다! 어쩔래! 이렇게 나온다. 사회가 다 폭력적이다. 우리 안의 특정한 개체만 계층만 딱 골라내서 청정지역 만들어서 하는 게 해결 가능한 방법인 것인가? 아까 합의라고 하는 거.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뭐냐면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당하면 그게 지역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는 부분. 개가 평생 보고 배운 건 뭐냐면 잘못하면 맞고, 말 안 들으면 맞는다. 그래서 물어보면 왜 때렸니? 물어보면, 애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선생님은 내가 맞을 땐 뭐하다가 이제 와서 내가 누구 때리니까 이제 와서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된다. 할머니, 아버님, 제가 신고 해야 되세요. 제가 신고할게요. 이려고 신고는 했지만, 그 친구들이 바라는 건 그거다. 나도 힘만 생기면 가만 안 둔다. 두고 봐. 이렇게 얘기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엄청 취약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 다른 아이들이 아직은 참을 수 있을만한 아이들인데, 몇몇 아이들은 감정이 확 상한 게 느껴진다. 여기서 누구 하나가 눈에 걸리면 재가 때리겠구나, 라는 게 보인다. 그래서 맞을 만한 아이가 보인다. 그래서 개를 보호하거나 다른 에너지를 주어져야 한다. 엄청 전문가들이 굉장히 여유 있게 돌볼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면 누구 누구 있으면 저 안 다녀요.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다. 욕하고 때리고. 때릴 거다! 어쩔 건데? 나도 맞았는데? 라고 나오면 교사들도 다 어쩔 수가 없다. 학교에서도 센터에서도 다들 성과를 얘기하고... 전체가 일정하게 일정한 속도대로 움직여야 하는 사회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에서 빼서 좀 여유 있게. 조금만 내가 내려가는 순간이 있고 조금 조용하고 편안하고 다독거리고, 하면서 천천히 다가가면 천천히 조절할 수 있는 게 배울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하나도 보장이 안 된다. 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벌이든 뭐든 필요하면 그거 안 된다, 라고 좀 강제해야 한다. 권리보장이려면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그 자체로 근거가 된다고 본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려면, 인프라나 조치나 이런 건 단계적으로 가능하다. 상담, 교육, 바우처 등등.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비타협적이다. 대신 예산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차차 늘려가는 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예산, 교육예산이 일정하게 그런 데에 쓸 수 있도록 비율로 정하지 않으면 보장 안 된다. 아무 것도 할 사람도 없고, 그거 관심 있는 사람도 없는데, 정해지지 않으면 누가 할까?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게 가능하려면? 아동청소년들의 정치세력화가 필수적이다. 여성들도 그랬던 것처럼. 아동청소년도 그렇다. 당연하다. 다문화 성인들, 노인들, 성소수자들도, 다 어른들이라서 얘기하고 능력만 있으면 막 얘기하고 그런다. 피선거자로 나오고. 근데 아동청소년들은 나올 수도 없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아동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하다못해 한 살이라도 투표연령을 내리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들을 다 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없다. 최소한 예산이라도. 전체적으로는 생활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게 있고. 부모나 교사나 또는 학교 공간에서, 학교 폭력이 아동학대를 일부 학생들도 반대하고 있다. 내 공부에 방해가 되어요. 하면서. 도대체 뭘 두려워하는지?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팀 체제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공익 변호사 있는 것처럼, 공익상담사 이런 건 왜 없는지? 누구를 붙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참을 수 있지. 때리기 전에 숨 세 번 쉬세요! 하면서 해야 좀 가능하다. 저도 맞고 자랐고, 저도 때린 적 있고. 그걸 평

생을 노력해야 아마 겨우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다. 정말로 많이 맞고.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 많고. 누군가는 일정하게 남들을 무시하면서, 다들 그렇게 무시하면서 일상적으로 사는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문화로 정착이 되려면 필요한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을 막 쓰다가 길어졌다. 여기까지 하겠다.

고유경: 이 사회가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안타까움과 울분이 와닿았다.

>> 18:44 플로어 토론

고유경: 이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 발제와 토론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의견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다.

필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차별이라는 게 학대라든가 한국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원초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회구성원이 되기까지는 사회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걸 좋고 이걸 안좋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맞으면 아프다, 아픈 것은 싫다. 이런 것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한 마리의 동물로서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성질이다. 그래서 차별이 아동학대로 보고 좀 더 강력하게 금지시키려면 근본적인 문제로는 합의의 방법? 그니까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합의들이 백지상태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그런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차별이 아동학대로 보고 최대한 근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백지상태인 사람도 좀 더 사회화 되지 않고, 사회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회에 적용하고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사회자: 백지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필부: 사회화가 안되고, 사회의 기본적인 합의를 체득하지 못한 사람들

오승민: 토론회 자체에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다.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옹호하는 분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하지 않지 않았나? 그럼 좀 더 발전적인 토론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그 안에 내재되어있는 권력담론, 이것이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말 자체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차별이 금지되어야 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아동학대의 눈으로 본 차별인데, 궁극적으로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넌 잘못되었고 넌 처벌받아야 해, 라고 하는 점이 궁극적인 해결이 될까? 하는 점에서 의문이 들었다. 오히려 뒤에 가 있는 학생인권이 앞으로 가서 학생인권의 눈으로 본 차별이라고 했을 때 좀 이상적이지만. 선생님에게 때리지 마! 때리면 나빠! 하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너는 맞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느리더라도 맞는 방향 아닐까.

사회자: 저희의 아픈 구석을 찢어주셨는데, 반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우리의 담론 자체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위에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다는 것 말씀

드리고 싶다.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그런 것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

성태숙: 이 안에 몇가지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있다. 인간의 신체를 관리하는 것은 폭력, 이런 방법을 써서 통제하는 것은 되게 엄청 강력한 수단인 것이다.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엄청 강력한 수단이다. 이런 구조 안에서 폭력이 허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교육적이다라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이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있다. 교사는 이것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다. 쉬운 방법이라..모든 인간은 그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깨려면 더 강력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더 강력한 명분이냐, 그냥 때리지 말아라는 것으로는 안 깨진다. 인권이 있어요, 하면 우리에게도 교권이 있어.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강력하게 들이댈 수 있는 무기가 뭐냐. 할 때 “학대”라는 것이 엄청 좋은 것이다. “너가 그럼 학대를 하겠다는 것이냐” 처음에는 일부의 행위가 학대로 규명이 되면서, 점점 점점 넓어지거나 처음부터 탁 끊는 것으로 하거나. 아동학대가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

공현: 받아서 얘기를 하면, 학대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라는 것으로 토론을 해보고 싶기는 하다. 권리구제라는 것이 양면적이다. 권리를 구제하려면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권리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하이리스크노우리턴, 위험부담이 크다. 그래서 제도를 갖추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토론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우선 준영님께, 법적으로는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 만약에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면 학부모들이 항의하지 않을 것인가, 효과적으로 정착이 가능한 것인가. 의문이 들고, 이기규 님에게도 교사들이 사기저하다, 학대 가해자라고까지 몰아붙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

준영 :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이 되면, 사실 짐이 되게 강하다, 한국 사회가. 집을 나오면 사회적으로 좀 보호가 안 된다. 청소년의 경우 특히 그렇다.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면 잃어야 하는 게 많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탈가정-가출을 했을 때, 폭력을 받아도 나가기가 힘들다. 질문 받고 생각해봤을 때, 아동학대특별법에서 청소년이 가정에서 폭력을 받았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주나를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폭력을 신고해도 그게 어떻게 이어지느냐. 일단 당사자의 생각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바로 형사처벌하고 격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경미한 체벌 같은 거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격리나 다른 교육적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좀 이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당연히 필요한데, 교육한다고 집에서 막 다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게 힘든 것 같다. 신고하는 게 위험부담은 큰데 돌아오는 게 적어서. 가정은 특히나 그런 것 같다.

이기규: 사회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사실 교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학대나, 체벌을 찬성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교사들은 나 때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맞는 것이기도 아닌 것이기도 하다.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생님도 있고, 업무나 시스템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꼭 교육감 초기 상담 등에 대한 예산 다 없어졌다. 그런 지원들이 되었으면 체벌금지하면 어찌

란 말이냐의 하소연 같은 문제는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업무를 줄이는 것도 계속 얘기는 되나, 현실성이 없다. 그런 부분의 예산도 불만인 것이, 대학교를 가장 높게 주고 초등학교는 낮다. 중고등학교에선 상담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중2병이라고 하는데, 중학교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초기단계의 고민을 하고 있는 데에 지원을 해야 한다. 미리 준비한다면 훨씬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학교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힘이 중요한데, 이것도 제도적인 부분인데, 최근 학칙개정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공문 내려서 학교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내리면 해야 한다는 속성이 있다. 그렇다는 것은 정책제안자들이 세밀한 정책을 제공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해결방법이 생길 것이다. 공문한장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개굴 : 질문과 의견이 같이 있다. 아동학대와 체벌의 만남, 이 접속을 고민했을 때 앞서 동천에서 오신 분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고민이 깊었다. 어쨌든 체벌보다는 학대의 개념이 보호의 긴급성, 절실성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개념이고, 그 동안의 학생인권운동은 어린이청소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었다. 그래서 약간 보호로만 머물게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이 있었다. 아동학대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서도 어린이청소년들의 주체성을 놓치지 않는 방안은 뭘까? 그게 뭘까 하는 걸 논의해봤으면 하는 제안이 있다. 피해아동으로 상정되는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면 누군가 나타나서 조치를 취해서 슛슛. 계속 대상이다. 이 당사자가 법에는 숨어있다. 체벌을 멈추기 위해서는 매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법에서도 당사자인 아동이 어떻게 이 시스템 속에서 움직일 수 있나? 그랬을 때 이 법의 하자(빠져있는 부분) 그런 부분인 것 같다. 시스템 작동과 당사자의 힘, 이게 시행초기부터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건지. 이게 같이 가야 하는 작업일 거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다. 두 번째는 이 법이 교사들을, 더 토라지게 만들 가능성을 갖고 있다. 어차피 일어날 거라면 감수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리자로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겨났다. 이번에 익산 사건에서도 교장이 난 몰랐다, 라고 발뺌한다. 근데 교장도 포함된다 신고의무자 보호자가. 교장의 특례법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어린이집 교사 뿐 아니라 원장이 함께 처벌받는 것처럼. 실제로 교장은 손에 피를 안 묻히고도 학생들을 체벌할 수 있다. 이랬을 때 실제 학교 문화와 규정을 좌지우지하는 교장을 어쨌든 주요 타겟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있다. 교장의 암묵적 동의와 특례법상 보호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든다. 교사를 아동학대 가해로 내모는 상수로서의 교장, 이걸 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좋겠다. 어떤 교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 변수인데, 교사는 상수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김은정: 방금 배경내 쌤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 교장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는 점에 공감을 한다. 작년에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이 있었을 때 국회의원실과 몇몇 민간단체가 진상조사위를 꾸린 적이 있다. 신고의무자 조항 관련해서 교사들에게 의무를 주는 것이 필요한데, 신고의무자가 어떻게 하면 실제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학교장 부분도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합의를 못했다. 학교장에 대해서 학교장을 모든 학대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교장이 몰랐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까지 물게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현장은 그렇다고 했고, 현장이 그렇다고 하는데 더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아동학대특별법 시행이 2개월이 되었는데, 개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법 개정엔 반영되도록 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할 정도로 과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 현장이 아닌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논의는 있었지만 법개정까지 이르지 못했다. 보호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아동을 어린아이들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법 역시 그렇게 엄두를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신고해줘야 한다는 것이 강했던 것이다. 신고의무자가 늘어난 것도 그 취지가 있었던 것이다. 스스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청소년, 그 스스로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충분히 상담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절차 안내할 수 있도록 있다. 격리조치는 마지막 단계이다. 사정을 다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한 후 한다. 학대받는 아동들이 부모들과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에 아도오이 의견을 어디까지 존중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점이다.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본인이 의사를 밝히고,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 들어가면서, 본인도 안전하게 가정 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태숙: 이야기를 듣다보니 뒷 배경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긴데 학생인권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 왔던 쪽에서 학교체벌과 관련해서 아동학대를 바라본 것이잖아요. 본래적인 의미에서 아동학대와 여기서 바라보고자 하는 아동학대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학생들의 주체성,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학대만으로 얘기되는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부분이 같이 얘기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법은 그걸 다 담아낼 수는 없고, 일부를 아주 뚜렷하게 보장하는 하나의 계기로써 얘기될 수능 있겠지만, 여기서 주체성을 살리기는 아주 어렵다. 권리의 구체적인 측면이라서... 두 번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 교장이 교장공모제로 의해 뽑힌 교장인데, 그 아래 밑에 아주 이상한 교사가 있어서 교장이 타겟으로 된다면... 어떤 측면에서 아동학대법은 굉장히 필요한 측면들이 있다. 학생인권 보장을 하는 측면에서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폭을 넓혀서, 아동청소년이라는 부분에서 생존권이라는 부분에서 필요한 것 같고, 강력하게 옹호해주는 게 필요하고. 정치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혹시 이런 것이 될 게 있으면 그건 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는 너무 과하게 득을 보려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되고 처벌되기만 해도. 정확하게 보호되고, 만이라도 대단히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계층들이 진일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볼게 된다.

김병희: 학교체벌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엔 이런 것이 있었다. 특별법을 만든 것은 귀찮아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해결해서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형법, 아동복지법으로 해결이 가능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솔직히 교육이라는 것이 나중에 학교를 끝나고 생각하면 내가 과연 뭘 배웠나 하는 생각이 있다. 정신적 가혹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쓸데 없는 것을 배우고, 알고 싶지 않은 것을 배우고, 이런 발상의 전환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현: 보호 문제가 확실히 관점 문제가 좀 어려운데... 서울시에서 광고를... 행위 광고? 오묘하고 신선한 발상이었는데, 피해를 받는 아동의 문제는 보지 않고 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거기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논의에서도 탈선을 조장한다고 난리를 쳤었고. 학교 경우 처벌이 아니라 학생회나 학교차원에서 해결을 담당하게 한다거나 역할을 주고 충분히 가지고 연대할 수 있게 해결행위의 주체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무리니까 광고 말씀을 드리면. 정신적 가혹행위 말씀하셨다. (학습시간 섣다운제 서명 홍보)

사회자 마무리 발언

끝.